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관의 공직후보자등록 제한〉

■ 김용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271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병 섭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법관의 공직후보자등록 제한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용민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0. 2.
3. 회 부 일 : 2025. 10.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은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음.

그러나 법관의 경우 재판의 업무가 향후 정치적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판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

이에 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함으로 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법관의 공직후보자등록 제한

- 개정안은 법관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른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

현행	개정안
<신설>	제50조의3(법관의 공직후보자등록 제한) 법관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다.

- 현재 법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1)에 따른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 제53조2)의 적용을 받는바, 공직선거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②“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2)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① 일반적으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퇴직하여야 하고,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및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퇴직하여야 함.

○ 개정안은 법관으로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9조³⁾에 따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퇴직한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이 금지되는 제한기간이 아래 표와 같이 확대됨.

[현행과 개정안에 따른 퇴직 법관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제한기간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안
제한근거		「공직선거법」 제53조	「법원조직법」 제50조의3
퇴직 기한	일반적	<u>선거일 90일 전</u> 까지 퇴직	<u>선거일 3년 전</u> 까지 퇴직
	예외적 (비례대표선거보궐선거 등)	<u>선거일 30일 전</u> 까지 퇴직	<u>선거일 3년 전</u> 까지 퇴직
비 고		타 국가공무원과 동일	타 국가공무원 대비 제한 강화

○ 법관이 퇴직 직후에 「공직선거법」 상의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법관이 그 지위와 권한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저해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관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관의 공직 취임을 다른 공무원에 비해 길게 제한하여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 다음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법관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제한기간 확대는 헌법 제25조⁴⁾에

4)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임권을 가진다.

따른 공무담임권(피선거권) 제한의 강화이므로, 개정안을 통해 실현되는 공익과 적용 대상자가 받게 되는 기본권 제한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검찰총장이 퇴직 후 2년간 공직에 임명될 수 없고,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던 (舊)「검찰청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 등에 대하여, 이는 과거의 특정 신분만을 이유로 한 개별적 기본권 제한으로서 그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권 행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입법목적 달성 효과도 의심스러워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검찰총장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정치적 결사의 자유’와 ‘참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⁵⁾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역에서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舊)「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들이 법률상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위 규정을 통해 실현되는

5)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7헌마26 결정.

공익과 그로 인해 청구인들이 입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
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⁶⁾

둘째,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전반에 적용되는 제한보다 강화된 제한을 법관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법관에게만 다른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법관은 다른 행정부(중앙행정부처
고위공직자, 경찰공무원 등), 검사⁷⁾, 그 밖의 헌법기관 및 독립기관
(감사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고위공직자·재판관, 고위공직자수사처
소속 검사 등)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제한
기간이 최소 4배(일반적 경우)에서 10배(비례대표선거·보궐선거 등)
수준으로 길어지는바, 법관에게만 강화된 제한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음.

6)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면 되는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기를 현저하게 앞당김으로써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피선거권)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기본권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의 적정성도 긍정되나,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들이 이미 공선법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조항에 의해 실현되는 공익과 그로 인해 청구인들이 입는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할 경우 양자간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 2003. 9. 25. 2003헌마106)

7) 다만, 검사에 대하여도 퇴직 후 일정기간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666호, 제2214268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셋째, 법 체계적 측면에서,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조직·인사·기능 등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법관의 정치적 중립에 관하여 포괄적 수준의 원칙과 의무 위주로 규율하고 있고, 공직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제한 등과 같은 선거제도 관련 세부 규정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법관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제한 사항을 「법원조직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법원행정처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도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음에도 법관에 한하여만 특별히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1